

발송처

서울고등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06594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 A동 103호(읍내리 596-1, 한국통신사원아파트)

원고

임그루



36322

2060816 - 513293 ↓

(행정과 제7행정부)

2019-057-72-006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 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예정 기일 :

담당재판부 : 제7행정부

법원사무관 오봉규

직통 전화 : 02-530-1260

팩 스 : 02-596-1190

e-mail : slghh007@scour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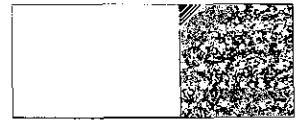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송달과 확정내역 포함)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나의사건검색'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 7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9재누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재심원고) 임그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A동 103호 (읍내리, 한국통신
 사원아파트)

피고(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대표이사 황창규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재누29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19.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이 유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재다20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확정된 이 법원 2000. 9. 7. 선고 2000누6383 판결에 불복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또는 각하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그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약

노태약 

판사

이정환

이정환 



판사

진상훈

진 상 훈





정본입니다.

2019. 10. 24.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오봉규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